

##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- 181호

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(안)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4일

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

###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 취지

-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('24.2.27, 총리주재)에 상정된 「인증 규제 정비방안」 안건의 제도 개선 사항 반영하여 업계 부담 완화
- 기존 기준 활용과 자율성 보장,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, 법령개정 사항 반영, 용어 및 문구 등 자구수정 사항 일괄 정비

#### 2.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(안) 주요내용

- ① ISO9001 체계 구비시, 공장심사 항목 중 일부 심사 면제(제16조제2항)
  - 심사 실무사항에 맞게 공장심사 항목 각 호의 내용을 현행화
- ② 품질인증기준 제·개정시 기 제정된 표준(KS), 인증기준(KC) 등이 없어도 제·개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(제10조제2항)
  - 동일 품목의 KS표준, KC인증 등 범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, 범용기준이 없더라도 품질인증기준 제정이 가능토록 절차 개선

③ 품질인증기준 제·개정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 기회 제공 및 품질인증기준 제·개정안의 작성 주체 명확화(제11조제1항, 제2항)

- 이해관계자의 제·개정 요청시, 검토사항을 추가하고 품질인증 기준 제·개정 지원의 외부 전문기관\*을 명확히 규정

\* 친환경산업법 제23조의3 및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전문연구기관

④ 현행 요령 內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현행화 및 용어, 근거조항 정비 등 자구수정 사항 일괄 정비(제2조, 제5조, 제29조)

⑤ 관련규정에 의거, 타당성을 검토의 재검토기한을 신설(제37조)

⑥ 별지(4, 5) 현행화

※ 개정(안) 신구문대비표, 개정(안) 전문 : 첨부파일(1, 2) 참조

#### 3. 의견제출

각 고시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. 7. 4.(목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개정(안)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※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연락처

○ 주소 :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(우 27737)

○ 전화 : 043-870-5509, ○ 팩스 : 043-870-5680